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. 4. 11 선고 2022가단5891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원

피 고 합자회사 B

변 론 종 결 2023. 3. 28.

판 결 선 고 2023. 4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대 392㎡에 관하여,
가.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0. 10. 17. 접수 제20427호로 마친
근저당권설정등기의,나.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0. 10. 17. 접수 제20428호로 마친
지상권설정등기의,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
2. 인정근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 심홍걸

별지